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식품의약품안전처

보 도 자 료

배 포	2021. 2. 3.(수)
담 당 과	사이버조사단
단 장 (직무대리)	김명호 (☎043-719-1902)
사 무 관/ 연 구 관	심진봉 (☎043-719-1910) 이주헌 (☎043-719-1920)

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

식약처, 2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**온라인 중고거래** 플랫폼을 이용해 **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**를 **거래**할 때 **각별한 주의**가 **필요**하다고 당부했습니다.

○ 식품·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, 관련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「약사법」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.

-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, **무허가·무표시 제품**, **유통(사용)기한**이 **지난 제품**을 **거래하면 안 됩니다**.

< 품목별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>

	식품·건강기능식품	의료기기	의약품
개인 판매	X	X 체온계, 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만 가능	X
영업자 판매	O	O	X

□ **(식품)** 「**식품위생법**」에 따라 **영업 신고한 영업자**만 **판매**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*될 수 있습니다.

* 무신고 식품 제조·판매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
OPEN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○ 구매자는 **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***하고 농·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**유통기한 등**을 반드시 **확인***해야 합니다.

* 확인방법 : 식품안전나라 누리집(홈페이지) > 전문정보 > 업체/제품 검색

○ 또한 **건강기능식품**도 「**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라 **판매업** 신고한 **영업자***만 온라인에서 **판매**가 **가능**하며,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**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****해야 합니다.

*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6조)

** 확인 방법 : 식품안전나라 누리집(홈페이지) > 전문정보 > 업체/제품 검색

□ **(의료기기)** 「**의료기기법**」에 따라 **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***을 **제외**하고 **판매업** 신고한 **영업자****만 온라인에서 **판매**가 **가능**합니다.

* (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) **콘돔, 체온계,**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 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**혈당측정기, 자동전자 혈압계,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** (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)

**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(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)

○ 구매자는 **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*하고,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**(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)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**위험**이 있으므로 **각별한 주의**가 필요합니다.

* 확인 방법 :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> 정보마당 > 제품정보방 > 업체/제품정보

□ **(의약품)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** 「**약사법**」 **위반***입니다.

*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○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·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**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OPEN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-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**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**의 조제·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, **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**해야 합니다.

□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·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월 3일 **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*와 업무협약**을 체결합니다.

*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: 당근마켓, 번개장터, 중고나라, 헬로마켓

** 민·관 협력 필요성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35개 기관과 업무 협약체결('18~'19)

○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·의약품 등의 **불법유통·부당광고 신속 차단, 교육·홍보**에 관한 사항 등이며

-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

□ 식약처는 의약품·의료기기를 중심으로 **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**할 계획이며, 관련 제품의 인·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**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자율관리 기반 확충**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1 카 드 뉴 스


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2 **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**

□ 개요

○ **(일시)** ’21.2.3.(수) 15:00 ~ 16:00

○ **(장소)**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

○ **(참석)** 식품의약품안전처,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

*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: 당근마켓, 번개장터, 중고나라, 헬로마켓

○ **(협력 분야)**

- 식품·의약품 등 불법유통 및 허위·과대광고 신속차단
- 식품·의약품 등 불법유통 및 허위·과대광고와 관련한 교육·홍보 사항
- 기타 각 기관 상호 협의사항

□ 업무 협약식 사진

추후 송부 예정

OPEN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